

한국의 동굴보호정책

최 병 문

상지대학교 법학과

I. 서론

- 동굴연구의 관심과 필요성¹⁾
- 우리나라 천연동굴의 개발과 보전의 현황과 문제점을 관련 인터넷 주소와 문헌 검색, 현지답사를 통해 살펴보고,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
- 서론(I), 동굴 관계법(II), 동굴보호를 위한 대안(III), 결론(IV)의 순서

II. 동굴 관계법

1. 문화 관계법

- 실무부서: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 문화유산현장: 이 현장은 '1997년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기초하고, 당시의 문화체육부, 내무부, 교육부,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제안하여 1997년 11월 25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1997년 12월 8일에 선포(상세는 이 글의 부록 1 참조).
 - 문화재보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1 최근에 "국내의 천연동굴의 보존과 관리"라는 주제의 '자연유산보존세미나'가 문화재청과 (사)자연유산보존협회의 공동주최로 2001. 10. 24. 강원도 평창 오대산호텔에서 있었다. 또 내년에는 "가장 깊은 비밀-동굴: 물과 시간이 빚어낸 신비의 세계(The deepest mystery-the cave: a world of fantasy formed by water and time)"라는 주제로 삼척시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국제동굴학회(UIS), 국제동굴연합(ISCA)가 후원하는 '2002년 삼척세계동굴박람회'가 2002. 7. 10.부터 8. 10.까지 32일간 삼척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상세는 홈페이지 <http://www.samchok.net> 참조).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

-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판단 및 처리지침: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와 제74조 제2항·제3항(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일정 지역 안에서의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과 처리에 관한 지침.
- 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 이 지침은 기존의 '동굴보전관리지침'을 보완하여 개정한 것임. 즉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6조, 제55조에 의한 국가·시도지정문화재 천연동굴 및 제2조, 제43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도모하고자 함(상세는 이 글의 부록 2 참조).
- 관광진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o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이 조약은 1970년 11월 14일 제16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 취지를 담고 있는 전문은 다음과 같음.

“197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16차 총회는, 제14차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문화협력원칙선언에 포함된 규정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과학, 문화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한 문화재의 국가간 교류가 인류문화에 관한 지식을 증진하고 모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하게 하고 국가간의 상호존중과 이해를 고취하는 것을 고려하여, 문화재는 문명과 국민과의 기본요소의 하나로서 존재하며, 그 참된 가치는 그 기원, 역사 및 전통적 배경에 관한 가능한 모든 정보와 관련해서만 감상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어떠한 영토 안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부과된 책임임을 고려하며, 이런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한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의 문화유산을 존중할 도덕적 임무에 대하여 보다 민감해져야 함을 고려하고, 문화기관으로서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들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도덕적 원칙에 따라 그 수집품을 확보한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며,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의 양도는 국가간 이해에 장애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에서 국제협약을 관계국가에 권고함은 「유네스코」의 사명이 됨을 고려하고, 문화유산의 보호는 긴밀히 협동하는 국가간에 국내적 또는 국제적인 조직을 통하여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며, 「유네스코」총회가 1964년에 이런 취지의 권고를 채택하였음을 고려하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 및 예방수단에 관한 제안이 금번 총회의 의사일정의 제19의제로 상정됨에 즈음하여 제15차 총회에서 이 문제는 국제협약의 주제가 되어야 함을 결의하고 1970년 11월 14일에 이 협약을 채택한다.”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이 조약은 1972년 11월 16일 제17회 「유네스코」 정기총회 채택. 그 내용은 전문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I), 그 국내 및 국제적 보호(II),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III),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IV), 국제원조를 위한 조건(V), 교육사업(VI), 보고(VII), 최종조항(VIII)의 순서로 되어 있음(상세는 이 글의 부록 3 참조).

2. 개발 관계법

- 실무부서: 건설교통부
 - 국토이용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 실무부서: 농림부
 - 농지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환경 관계법

- 실무부서: 환경부 환경청
 - 환경정책기본법, 동법 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유해화학물

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먹는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도법, 하수도법 등.
- 자연공원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기타 관계법

-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중위생법, 담배사업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사도법, 산림법, 소방사업법, 식품위생법, 외국환관리법, 우편관계법령, 인삼사업법, 주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학교보건법, 향만법 등.

Ⅲ. 동굴보호를 위한 대안

1. 동굴 보호체계의 강화

○ 동굴보호행정의 체계화

- 다원화되어 있는 동굴관련 행정부서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 동굴이 지형, 지물 등과 관련되면 문화재 보호의 문제로 보고, 생태, 생물 등과 관련되면 환경 보호의 문제로 보는 이원화된 구조라고 평가됨.

○ 동굴학을 체계화하기 위한 학제간 공동연구의 필요성

○ 국내의 민·관·산·학·연(民·官·産·學·研)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

- 민(민간단체): 한국동굴탐험학교(www.dongang.co.kr)
- 관(관공서): 문화관광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 산(산업체):

- 學(대학·학회)

* 학과:

* 학회: 한국동굴학회, 한국동굴환경학회, 제주도동굴환경연구회 등.

* 동아리(씨클): 강원대학교 동굴연구회(my.netian.com/~knucic), 건국대학교 동굴탐사회(www.konkuk.ac.kr/home/cave), 동국대학교 동굴탐험연구회(myhome.netsgo.com/caver95), 상지대학교동굴탐사회(my.netian.com/~cave), 서원대학교 학술탐험(dragon.seowon.ac.kr/~cave), 영남대학교 탐험대(chunma.yeungnam.ac.kr/~yuet) 등.

- 硏(연구소): 강원대학교 동굴연구소, 한국동굴생태환경연구소(myhome.netsgo.com/kcavere) 등

o 남·북한 공동연구의 필요성

- 남북한 동굴의 실태조사를 위한 공동연구팀 구성

o 외국의 관련 학·협회와의 국제교류 활성화의 필요성

- 미국동굴협회(the National Speleological Society; NSS)(www.caves.org), 미국북서지역 동굴협회, 영국동굴학회(www.caving.uk.com), 영국동굴협회(National Caving Association;NCA)(www.nca.org.uk), 영국동굴연구회(the Transactions of the British Cave Research Associate), 호주시드니케이빙스포츠연합회, 서호주동굴협회(wasg.iinet.net.au), 뉴질랜드동굴협회(www.massey.ac.nz/~SGlasgow/nzss/welcome.htm), 필리핀 마닐라케이빙클럽, 일본동굴학회(www.netlaputa.ne.jp/~ssj/whatssj.html), 일본화산동굴학회, 중국동굴협회, 중국연변동굴협회 등.

2. 동굴 관계법의 정비

o 단기 과제

- 개발과 보전의 관점에서 상충되는 관련법규 정비

- 현행 실정법상의 동굴관련 제도의 미비사항 시정 조치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의 기술요원인 문화재수리기술자와 그 자격시험 관련규정에 동굴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됨(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이하 참조).

* 매장문화재의 보상: 보상에서 동굴이 제외되어 있다고 해석됨(동법 제46조 이하 참조).

* 비상시의 문화재 보호: 여기에도 동굴이 제외되어 있다고 해석됨(동법 제71조 이하 참조).

○ 중·장기 과제

- 동굴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
- 동굴기본법(법률), 동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동굴기본법 시행규칙(부령)의 입안

IV. 결 론

○ 정부의 유관위원회에 동굴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 1과 산하의 문화재위원회(심의기구)에의 참여.

7개의 분과로 활동. 즉 제1분과(건조물문화재, 민속가옥), 제2분과(동산문화재), 제3분과(사적), 제4분과(무형문화재), 제5분과(명승, 천연기념물), 제6분과(매장문화재), 제7분과(박물관, 미술관 등록).

- 환경부나 환경청 산하의 유관위원회에의 참여
- 건설교통부 기타 산하의 유관위원회에의 참여

○ 한국동굴학회의 전문단체화 추진

- 한반도의 동굴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 학술조사를 할 수 있는 정부공인 학술단체로 격상시킬 필요성
- 정부의 공식적 예산지원, 동굴 촬영권에 대한 권리(특허) 등을 고려할 단계
- 동굴관련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한국동굴학회의 공식적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
- 환경을 고려한 동굴 개발정책 입안. 동굴개발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관련법

규, 자원적 가치, 관광수요 및 개발의 유형, 문제점과 저감방안, 환경보존진 단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국가지리정보체계 작업의 일환으로 한반도 동굴지도 완성의 필요성
 - 한반도 동굴의 GIS 완성. 이것은 동굴의 교육, 관광, 보호 등을 위한 기초자료.
- 동굴과 동굴학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천연동굴 관리·운영’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오락관련 산업’(other recreational activities n.e.c.)(92499)으로 분류되어 있음.
- 동굴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
 -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000년 10대 중점추진과제²⁾에서 동굴에 대해 언급

참고문헌

- 고봉헌, “일본 동굴의 개발과 보존관리,”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44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95. 12.
- 김병우 외, 온달동굴내의 일부지구 환경과 개·보수 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동굴학회, 2000.
- 김수갑, “문화재보호법의 체계,” 법과 사회, 2000 하반기(통권 제19호), 서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0. 11.
- 남궁승태, “역사적 문화환경권과 고도보존의 문제,” 법과 사회, 2000 하반기(통

2 10대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새천년 창의적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첫째,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21세기 ‘문화한국’ 역량 제고. 둘째, 문화와 기업이 상호협력, 국가경쟁력 강화. 셋째, 문화국가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새로운 문화환경에 부응하는 법령·제도 개선에서 발국유물 국가귀속 제도개선(2000 하반기), 현행 발굴·출토되는 모든 유물의 국가 귀속·보관관리 제도를 개선, 유물 등급 분류를 통해 귀속기관 및 시기 등 보관·처리기준을 마련, 천연기념물 공개동굴(제155호 울진 성류굴 등 8개) 휴식년제 도입, 관람객 출입으로 훼손 우려가 높은 동굴 대상(2000년 실태조사·시범실시), ② 21세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예술창작환경 조성, ③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생산적 문화복지 확대, ④ 문화 정보화를 통한 지식기반사회 촉진, ⑤ 문화콘텐츠를 지식기반경제의 신산업으로 육성, ⑥ 21세기 관광대국을 향한 기틀마련, ⑦ 체육강국의 위상강화로 활기찬 사회 조성, ⑧ 희망과 꿈을 열어 가는 청소년 육성, ⑨ 건전 종교문화 조성과 남북교류 활성화, ⑩ 민족문화 보존·전승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 첫째,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확산. 둘째, 문화유산의 보존·정비 및 관광자원화 추진. 문화재 원형 보존 및 체계적 정비, 천연기념물의 자연 생태적 보호관리, 문화유적의 관광자원 활용, 셋째, ‘문화한국’ 이미지 제고와 우리 문화의 세계화.

권 제19호), 서울: 법과 사회이론학회, 2000. 11.

문화재청 편,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서울: 문화재청, 2000. 10.

신대봉, “동굴개발과 동굴지물의 오손 대책,”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43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95. 9.

신중성, “우리나라의 관광개발과 자연보존에 관한 연구,”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3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78. 5.

원병관, “동굴의 환경보존과 관광자원 개발,”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52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97. 12.

유영준/이경호, “관광동굴의 환경친화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59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99. 9.

이금수, “동굴의 환경보전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22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90. 6.

홍시환, “자연보호와 동굴의 환경보전,”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4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79. 5.

_____, “우리나라 용암동굴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지형구조 분석,”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8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82. 8.

_____, “우리나라 주요 관광동굴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15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87. 4.

_____, “관광동굴의 환경변화와 보전에 관한 연구,”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16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87. 10.

_____, “동굴의 이용과 환경보전,”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54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98. 6.

_____, “환경보전면에서 본 성류굴,”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56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98. 12.

_____, “관광동굴의 환경보전관리에 관한 연구,”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59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99. 9.

홍철화, “우리나라 동굴 문화재의 관리방안 연구,”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42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95. 6.

- _____, “동굴의 특성과 환경보전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51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97. 9.
- 홍충렬, “미국의 관광동굴 소개(I),”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45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96. 3.
- _____, “미국의 동굴(II),”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53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98. 3.
- 勝間田隆吉, “제주도의 관광개발에 관하여,” 동굴(한국동굴학회지), 통권 제4호, 서울: 한국동굴학회, 1978. 5.

부록 1: 문화유산현장

문화 유산은 우리의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 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 유산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유산현장을 제정한다.

1.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주의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된다.
1.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야 한다.
1.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1997년 12월 8일

부록 2: 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³⁾

제1장 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조, 제55조에 의한 국가·시도지정 문화재천연동굴 및 제2조, 제43조에 의한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적용의 범위

- 법 제2장, 제3장, 제5장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해당 동굴과 그 관리자(단체)에 적용됨

3. 문화재로서 천연동굴의 범위

가. 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천연동굴(이하 “동굴”이라 함)

- 동굴 규모: 지하 암체내에서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으로 적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 단, 사람의 출입이 어려우나 연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을 포함
- 동굴 종류: 동굴은 그를 배태하고 있는 암석과 성인으로 보아 석회동굴, 화산동굴, 절리굴, 하식 및 해식동굴 등으로 구분
- 동굴 가치: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나. 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시·도지정문화재(지방기념물)로 지정된 동굴

다. 나항을 제외하고 법 제43조에 의거 매장문화재에 포함되는 동굴

4. 보존관리 준거규정

- 동굴의 보존관리는 문화재보호법을 기준으로 하되, 천연기념물 동굴은 법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지방기념물 동굴은 법 제5장 시·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동굴은 법 제3장 매장문화재 규정을 기본으로 함

5. 종합학술조사 실시

- 동굴관리의 기본계획은 정밀 종합학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하므로, 동굴관리자는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3 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 (서울: 문화재청, 2000. 10.)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

1.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가. 공개동굴은 동굴 공개에 앞서 효과적인 동굴의 장기적 보존관리를 위해 종합계획(마스터 플랜)을 작성하여야 함

나. 동굴의 수시점검(법 제25조)

(1) 동굴관리자(단체)는 공개로 인한 동굴의 환경변화 및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굴의 보존과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수시로 점검 검토하여야 함

(가) 동굴 내부의 환경변화(온도, 습도, 수량, 수질, 생물상, CO₂ 농도 등) 상태

(나) 동굴 내부의 오염 및 훼손(녹색·흑색·박리현상, 파손 또는 붕괴 등) 상태

(다) 동굴의 시설물(관람로, 조명, 전기시설, 음향 등의 시설) 상태

(라) 동굴 주변의 자연환경 및 시설물 상태

(마) 안내원의 활용, 관람객에 대한 교육, 관람객수, 관람형태, 환경관리 사항 등의 운영·관리의 적정성

(바) 낙반과 시설물의 안전성

(사) 기타 안내판, 경고판 등 보호·홍보시설 등

(2) (1)사항의 점검결과는 주1회 이상 조사·기록하고(단, 온도, 습도, CO₂ 농도는 자동측정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일변화, 연변화에 대한 자료작성), 이 기록은 정기적인 동굴실태조사시 조사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토록 함

다. 동굴실태조사 및 안전진단(법 제25조)

(1) 동굴관리자(단체)는 공개동굴의 문화재로서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전문가를 위촉, 나 (1)항의 수시 점검자료를 제공 격년으로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동굴실태조사

○ 동굴 내부환경: 관람객의 입굴에 따르는 온도, 습도, CO₂ 농도, 풍향, 수질 등의 변화

○ 동굴 외부환경: 동굴부근의 지형·지질의 특성, 생태계, 동굴의 자연환경과 연계된 지역

○ 미지형과 동굴생성물의 보존상태(생장 또는 훼손여부)

○ 동굴 생물상

○ 녹색오염, 흑색현상, 박리현상의 실태를 확인하고 내부환경의 변화 또는 조명등의 시설물과의 관련성의 여부 검토

○ 동굴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검토

○ 상기 제반사항을 조사 검토하고 동굴의 보존대책을 제시

○ 실태조사 실제 조사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여 4계절 변화와 관람객 변화에 따른 조사의 충실도를 기하도록 함

- 실태조사 범위는 공개구간과 비공개 구간을 포함시켜야 함

(나) 동굴의 안전진단

- 지질구조 및 지형과 관련된 낙반 또는 동굴 붕괴
- 동굴환경의 안전성 검토
- 통로, 전기, 조명 등 시설물의 안전성
- 관리·운영과 관련된 안전성(관람객 수, 관람객의 교육효과 등)
- 상기 제반사항을 조사 검토하고 관람객의 안전성 또는 동굴의 보존대책 강구

(2) 공개동굴 관리자(단체)는 실태조사보고서와 안전진단보고서를 격년으로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3)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은 반드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내실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라. 수시점검, 실태조사,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법 제25조)

(1) 수시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가) 다음 사항은 동굴의 환경유지를 위한 기본사항으로서 수시로 점검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함

① 녹색오염 및 흑색오염 방지 및 제거

○ 녹색오염 및 흑색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시 동굴생성물의 훼손(지나친 솔질, 진흙의 피복 등), 동굴생물체의 영향(화학약품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굴관계전문가(기관)의 자문·점검을 받아야 함

○ 녹색·흑색오염 제거 후에도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억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발생의 원인을 밝혀 그들의 발생장소, 발생지의 조명현황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실태조사시 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② 흑색오염의 방지

○ 관람객이 동굴생성물을 인위적으로 접촉하여 흑색현상이 나타나는 동굴은 관람객 입굴시 면장갑을 착용하도록 함

○ 일시에 많은 인원이 입굴함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흑색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일 적정인원 입굴, 안내원에 의한 그룹입굴 등의 관람시스템을 유도해야 함

③ 청결유지

○ 관람객의 동굴내 쓰레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여야 하며, 입굴전에 음식물 등의 반입을 금지해야 함

○ 동굴내 호소에 동전을 버리는 행위는 동굴생물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전투기는 철저히 금해야 함

○ 동굴내 버려진 쓰레기는 즉시 제거하여야 함

④ 소음방지

- 소음은 관람에 지장을 주고 동굴생물의 번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조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음의 억제를 위해 관람통로를 개선하고, 관람객의 효과적인 교육을 통하여 관람태도가 개선되도록 하여야 함
 - ⑤ 동굴생물의 보존
 - 동굴생물의 보존을 위해 공개구간내 주요 서식지에는 조명을 피하고, 관람객의 영향이 없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보호시설을 하여야 함
 - 필요시 동굴내의 동굴생물 보존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 동굴생물의 서식처를 만들어 주도록 함
 - ⑥ 동굴 및 시설의 안전관리
 - 동굴내에 낙반의 위험이 있는 지점과 동굴내에 설치된 시설물과 전기시설 등에 대한 안전도를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관람객의 접근을 금함
 - (나) 수시 점검결과 지적된 여러 중요사항은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시·도지사가 판단·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함
 - (다) 동굴환경 보존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점검을 받아야 함
- (2)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동굴관리자(단체)는 문화재청에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한 문화재청의 자문·검토후, 보고서에 지적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정·이행한 후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평가를 받아야 함
- 마. 동굴내 비공개 보존지역의 설정 및 보호(법 제25조, 제33조 제2항)
- (1) 동굴관리자는 동굴의 학술적·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동굴내에 비공개 보존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 (2) 동굴 비공개 보존지역은 동굴의 자연환경 보존과 공개구간과의 비교 등을 위하여 지정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입굴과 시설물의 설치와 같은 행위는 학술조사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억제되어야 함
 - (3) 동굴 비공개 보존지역은 격년으로 실시하는 조사대상 지역에 포함하여 양자를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그 구역의 규모와 환경에 대하여 지정구역으로서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 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법 제20조)
- 동굴의 보존·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1) 동굴내의 생성물이나 동굴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2) 동굴내에서 촬영 등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공개구간의 촬영 행위
 - 공개구간의 학술조사 행위 등
- (3) 동굴(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동굴 비공개 보존지역을 입굴(촬영, 학술조사 등)하는 행위
 - 일정기간 공개 제한된 동굴을 입굴(촬영, 학술조사 등)하는 행위
 - 동굴 내부의 각종 시설물을 보수·개수·신설하는 행위
 - 동굴 주변에 각종 시설물을 보수·개수·신설하는 행위
 - 동굴 공개구간을 변경하는 경우
 - 동굴 공개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개월 이상 장기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동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행위
- 사. 동굴의 교육적·자연친화적 활용(법 제25조)
- (1) 동굴의 공개목적 및 관리자의 기본자세 확립
- (가) 동굴의 공개는 국민들이 우리의 소중한 자연문화재를 직접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나) 동굴관리자는 국민들이 동굴에 대해 문화재로서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 학습장의 일환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 (2) 동굴의 자연친화적 활용
- (가) 동굴은 관람객의 출입으로 인하여 매우 민감한 환경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동굴로 유도하여 장기간의 보존·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① 수용능력 이상의 입굴 제한
 - 격년 실시하는 동굴실태조사시 관계전문가(기관)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1일 최대 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야 함
 - 1일 최대수용 가능인원 이상 입굴은 제한하여야 함
 - ② 1일 공개시간은 8시간을 최대로 하고 동굴의 상태, 관람객의 수 등을 고려하여 1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때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③ 동굴내 모든 시설물과 동굴 주변의 편의시설의 보수·개수·신설은 1일 최대수용 가능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동굴환경, 동굴주변 자연·인문환경, 향후 동굴의 보존과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3) 교육의 장으로서의 활용
- (가) 관람객의 무분별한 입굴은 소음발생, 생성물의 훼손, 쓰레기 투기, 동굴 대기환경의 변화 등을 유발하여 동굴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됨
 - (나) 동굴의 공개목적은 문화재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것이므로 다음 사항 등을 개선 준수하여야 함
 - 동굴 입굴전에 관람시의 동굴보존 및 관람객 안전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관람객의 동굴에 대한 교육과 동굴의 환경유지를 위해 안내자의 인솔하에 단체관람을 실시해야 하며, 동굴훼손의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는 고정안내원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안내원은 동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동굴관계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자로 함
- 동굴 전문가에 의하여 편집된 동굴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동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동굴여건에 따라 필요시 동굴전시관 등의 교육·전시시설을 건립·활용하도록 함

아. 공개제한을 통한 동굴보존(법 제33조 제2항)

- (1) 동굴 공개에 따른 동굴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부적절한 관리운영으로 동굴의 환경이 심각히 훼손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일정구간 공개를 제한함으로써 동굴의 환경훼손을 방지해야 함
- (2) 문화재청장은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
- (3) 문화재청장은 공개를 제한할 경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 (4) 동굴 훼손상태가 극히 좋지 못하여 공개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동굴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직권제한과는 별도로 시·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동굴 공개 제한을 문화재청에 건의할 수 있음

자. 각종 시설물의 설치(법 제25조)

(1) 환경측정 장치의 설치

- 관람객의 출입으로 인한 동굴의 환경변화는 동굴의 훼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동굴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정밀조사가 필수적이며 동시에 관리자(단체)에 의한 지속적인 동굴 환경측정이 필요함
- 따라서 동굴관리자(단체)는 항상 동굴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분압 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측정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측정된 자료는 격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시 기본자료로 제시되어야 함

(2) 동굴내 관람시설의 설치 기준

- (가) 동굴관리단체는 동굴 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굴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 시설물의 종류, 규모는 동굴의 1일 최대수용 가능인원 및 1회 동시입장 가능인원을 기준으로 함
 - 시설물의 재료는 영구적이고 동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 함
 - 나무, 철재, 시멘트 등 부식이나 오염의 원인이 되는 재료 지양
 - 스테인레스스틸, 강화재순환플라스틱 권장

○ 시설물의 설치위치, 규모 등은 동굴생성물, 동굴생물 등 동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동굴관리자(단체)는 관람시설을 신설·개수·보수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동굴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에 관해 시설물관계 전문기관 및 동굴관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야함

차. 동굴내 조명의 설치

(1) 동굴관리단체는 동굴내의 조명시설을 신설·개수·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가) 조명의 조도를 가급적 최대한 낮추어 녹색오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나) 조명에 색을 넣는 것을 지양(가급적 무색)하고, 필요시 일부조명은 살균등으로 교체하여 녹색오염의 성장을 억제하도록 함

(다) 조명의 설치위치는 관람객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꼭 필요한 지역 이외의 조명은 억제해야 함

(라) 모든 조명에 갓을 설치하여 조명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열의 발생이 적은 종류의 조명을 사용해야 함

(마) 동굴의 색채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가변성 조명을 설치함

(바) 관람객이 없을 경우 조명은 소등되도록 하며, 안내원에 의한 단체관람이 이루어지도록 함. (단, 비상기에는 자동센서 장치가 부착된 조명을 사용하여 항상 소등상태가 유지되도록 함)

(사) 조명의 설치시에는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배선체계를 세워야 함

(2) 조명을 신설·개수·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명의 종류, 설치장소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동굴관계 전문기관 및 조명관계 전문기관 등의 점검을 받아야 함

(3) 조명의 위치, 방향 등을 바꾸거나 새로운 조명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함

카. 기록의 작성·보존(법 제19조)

○ 동굴관리자(단체)는 동굴현황 및 동굴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을 지속적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함

(1) 동굴 위치도(1:5,000 지형도상, 지적도·임야도상)

(2) 동굴도(1:500 또는 1:1,000 평면, 종단, 횡단도 등) 작성

(3) 동굴지질구조도(1:500 또는 1:1000 등) 작성

(4) 동굴의 구조와 형성과정에 대한 자료

(5) 주요 동굴생성물의 분포와 특징이 상세히 작성된 동굴도(1:1000 등)

(6) 동굴의 오염상태가 상세히 작성된 동굴도(1:1000)

(7) 동굴 내부시설물 각각의 설계도

(8) 문화재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현황 및 도면(1:5,000 지형도상, 지적도 및 임야도상)

(9) 상세한 화보 또는 사진(주요 동굴 생성물과 동굴생물, 오염상태, 내부시설물, 주변시설물 등)

- (10) 환경관측 장치로부터 얻은 자료
- (11) 동굴내 동굴수의 분포 및 유량과 수질 분석자료
- (12) 동굴생물의 종류와 분포자료
- (13) 동굴내의 퇴적물에 대한 자료
- (14) 동굴 주변의 지형 및 지질에 관한 자료
- (15) 동굴 주변의 지하수와 동굴수의 이동경로
- (16) 기존 조명과 다른 종류의 조명교체, 방향 및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
- (17) 종합학술조사는 10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한번도 종합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굴은 본 지침 시행후 곧바로 조사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함)

타. 관람수익의 활용(법 제39조)

- 동굴관리자(단체)는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동굴의 보호·관리·조사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

가. 동굴점검(법 제25조)

- 동굴관리자(단체)는 천연기념물 비공개동굴 및 동굴 주변환경, 보존시설물 등 보존상태를 점검하여야 함

- (1) 동굴상태
- (2) 동굴 보호시설물(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등) 상태
- (3) 동굴 주변환경 상태(인근지역 공사나 시설물 설치로 인한 위해 요소 등)

나. 입굴제한(법 제20조, 제25조, 제33조 제2항)

- (1) 동굴의 비공개는 동굴의 원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문화재지정 동굴은 내부 생물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인위적인 영향에 매우 민감하고 환경변화의 가능성이 커 입굴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

(2) 입굴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주변의 환경변화 요인으로 인해 동굴의 환경변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종합학술조사와 같이 관계전문가(기관)에 의한 학술조사
- 기타 동굴의 보존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3) 입굴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법 제20조)

- 동굴의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행위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동굴의 지정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2) 동굴내에서 촬영 등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3) 동굴(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라. 보호시설 설치(법 제25조)
- 동굴관리자(단체)는 동굴의 인위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책, 안내판, 경고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동굴 보호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동굴의 지질학적 환경(동굴 분포 지상부의 환경 등), 생물학적 환경(동굴생물) 등 동굴환경 유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마. 기록의 작성·보존(법 제19조)
- 동굴관리자(단체)는 동굴현황 및 동굴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을 지속적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함
 - (1) 동굴 위치도(1:5,000 지형도상, 지적도·임야도상)
 - (2) 동굴 생성물이 상세히 작성된 동굴도(1:1,000 이하 등)
 - (3) 문화재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현황 및 도면(1:5,000지형도상, 지적도·임야도상)
 - (4) 상세한 사진첩(동굴내부환경, 주변환경)과 간략한 설명
 - (5) 종합학술조사는 10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제3장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보존·관리

1. 시도지정문화재 지정동굴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도조례에 의하되, 다음 사항은 법 제58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관계규정을 준용함
-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 나. 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라. 법 제20조에 의한 허가사항
 - 마. 법 제25조에 의한 행정명령
 - 바. 법 제27조에 의한 신고사항
 - 사. 법 제33조에 의한 공개
 - 아. 법 제39조에 의한 관람료의 징수
 - 자. 법 제41조에 의한 직권에 의한 조사
2. 위의 준용규정의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봄
3. 시·도지정문화재 동굴관리와 관련하여 제3장의 1에 없는 사항은 본 지침 제2장에 규정한 천연기념물 동굴관리 공개·비공개동굴 내용을 준용하도록 함

4.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57조)
- 가. 천연동굴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
 - 나.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의 현상변경 등의 공사에 착수하거나 그 공사를 완료한 때
 - 다. 시·도지정문화재 동굴이 훼손된 때
 - 라. 문화재청장은 위의 가, 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제4장 매장문화재 천연동굴

1. 발견신고(법 제43조)
- o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나 건조물의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그 발견된 사실을 신고해야 함
2. 문화재 가치평가(법 제3조 제1항 제11호)
- 가.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평가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평가함
 - 나. 시·도지사 등 관계자는 동굴의 가치평가에 필요한 동굴현황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보존(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48조의3)
- 가. 매장문화재 동굴은 법 제48조의3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보호하여야 함
 - 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존(법 제48조의2, 제74조, 제75조의2)
 - (1) 각종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개시 이전에 공사지역과 공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굴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천연동굴의 분포와 동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함
 - (2) 시·도지사 등 관계자는 천연동굴의 보존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다. 자연적 현상으로 인한 동굴의 환경변화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화현상 그대로 보존하도록 함
4. 동굴활용(법 제43조, 제44조, 제48조의3)
- 가. 이미 알려진 동굴, 또는 새로 발견된 동굴을 장기간에 걸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동굴의 문화재적 가치평가 및 동굴의 보존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함
 - 나. 교육용 등으로 동굴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활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다. 동굴이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고, 활용이 허가된 경우에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동굴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함

5. 입굴(법 제48조의3)

- 가. 매장문화재 천연동굴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동굴의 입굴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굴훼손의 방지를 위하여 학술조사 이외의 타 목적 입굴은 가급적 제한함
- 나. 기타 문화재적 가치가 희소하거나 가치평가가 되지 않은 동굴을 입굴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입굴 및 조사결과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동굴 조사후에는 동굴의 훼손상태와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제출함)
- 다. 시·군·구청장은 입굴시 조사한 사항에 대한 관련사진 등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중요 사항은 시·도지사를 경유 문화재청장에게 바로 보고하여 필요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보호시설의 설치(법 제48조의3)

- 시·도지사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동굴은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도록 안내판, 경고판, 보호책 등 동굴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
- 특히 동굴입구에 보호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동굴환경의 보존과 박쥐 등 생물들의 출입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굴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7. 기록의 작성·보존(법 제48조의3)

- 시·도지사는 동굴현황 및 분포상태를 알 수 있도록 아래의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 (1) 동굴 개관
 - (2) 동굴 위치도(지형도상)
 - (3) 동굴도
 - (4) 사진자료첩(동굴내부환경, 주요 동굴생성물, 주변환경)과 간략한 설명

8. 탐사·발굴 등(법 제48조의3)

- 가. 학술적 가치가 있으리라 믿어지는 천연동굴은 매장문화재의 범규에 따라 탐사 발굴되어야 하며, 그의 규모, 경관, 학술적 가치 등으로 보아 천연기념물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추천 보호되어야 함
- 나. 매장문화재 동굴에 대한 조사는 동굴 부근의 지형·지질, 생태계의 개황, 1천분의1 또는 2천분의1 동굴도(평면도), 동굴의 형태 및 미지형, 동굴생성물 등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 다. 5천분의1 지형도상에 동굴평면도를 도시하여야 함
- 라. 매장문화재 동굴은 입굴이 철저히 통제되지 않아 동굴생성물, 동굴생물 등의 도굴 또는 훼손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보호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부록 3: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⁴⁾

1972년 10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제17차 정기총회는 문화 및 자연유산은 원래 갖고 있는 쇠퇴의 원인에 의할 뿐만 아니라, 가공할 만한 손상 및 파괴를 수반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사회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도 점점 더 파괴의 위협에 빠져드는 것에 유의하고, 어떠한 문화 및 자연유산의 손괴 및 멸실은 세계 모든 국민의 유산을 빈곤화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이 유산의 국내적 보호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보호대상유산이 위치한 국가의 경제적, 과학적 및 기술적 능력이 불충분할 경우 유산보호가 불완전한 것임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헌장이 세계 유산의 보존 및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국민에 대하여 필요한 국제 협약을 권고하게끔 되어 지식의 향상, 증진 및 보급의 기본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기하고, 문화 및 자연유산에 관한 기존의 국제 협약과 함께 국제적 권고 및 결의가 어떠한 국민에게 속하는 것이든 간에 이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 따라서 전 인류를 위한 세계 유산의 일부로서 보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러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의 심각함과 중대함에 비추어 해당국이 취하는 조치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유효한 보조적 수단이 될 공동 원조를 줌으로써 유산보호에 참가하는 일이 국제사회 전체에 주어진 의무라는 것을 고려하고,

이를 위해 항구적 기초 위에, 현대의 과학적 방법에 따라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새로운 조치를 협약의 형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제16차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국제 협약의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의결하였기 때문에 1972년 11월 16일에 이 협약을 채택한다.

I.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상 문화유산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기념물: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갖고 있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한 세계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건조물군: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의 건축성, 균질성 또는 풍경 안의 위치로부터 역사상, 미술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유적지: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 관상상, 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제2조 이 협약상 자연유산이란 다음을 말한다.

4 1972년 11월 16일 제17회 「유네스코」 정기총회 채택.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과 이와 함께 위협에 처해 있는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로서 특히 특정 구역에서 과학상, 보존상 나아가서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제3조 각 계약국은 위의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 위치한 여러 유산을 조사 및 파악한다.

II.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 및 국제적 보호

제4조 각 계약국은 제1조 및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자국 내에 위치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식별하고 이를 보호, 보존, 활용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전승시키는 것이 자국에 과하여진 최우선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계약국은 자국이 갖는 모든 능력을 활용하고 또 적당한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한도의 국제적 원조 및 협력, 특히 재정, 예술, 과학기술적 원조와 협력을 얻어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제5조 각 계약국은 자국 내에 위치하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효과적 또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자국에 적합한 조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문화 및 자연유산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며 지역개발계획에 유산 보호를 반영한 종합정책을 채택한다.
2.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직원 체제를 갖추어 특히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갖는 기관을 1 또는 2 이상 자국 내에 설치한다.
3. 학문적, 기술적 연구 및 조사를 발전시키고 자국의 문화 또는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작성한다.
4.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5.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의 분야에 있어서 전국적 또는 지역적 훈련기구의 설치 또는 확충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장려한다.

제6조 ① 계약국은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이 세계의 유산이라는 것, 따라서 그 유산의 보호에 협력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유산이 영토 내에 위치하는 국가의 주권은 충분히 존중되도록 하고 또 국내법이 정한 재산권은 해치지 아니한다.

② 체약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및 활용에 있어, 해당 유산이 위치한 국가의 요청에 응해서 원조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 각 체약국은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 위치하는 유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조치를 고의로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제적 보호란, 체약국이 행하는 유산의 보존 및 지정 노력에 대해서 지원을 보내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및 원조체제의 확립을 말한다.

III.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제8조 ①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정부간 위원회(세계유산위원회)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정기총회 중에 개최되는 체약국 회의에서 선출되는 15개 위원국으로 구성된다. 위원국 수는 협약 가입국수가 적어도 40개국을 넘어서는 경우 최초 개최되는 정기총회부터 21개국으로 증가한다.

② 위원국 선출은 전 세계의 상이한 지역 및 문화가 공평하게 대표되도록 한다.

③ 이 위원회의 회의에는 국제문화재보존 및 보수연구 센터(로마 센터)의 대표 1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ICOMOS)의 대표 1인 및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의 대표 1인이 협약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체약국 정기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부간 기구 혹은 비정부기구의 대표자들도 자문역으로 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조 ①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의 임기는 위원국에 선출된 정기총회 종료일로부터 3번째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6년간).

② 최초의 선거에서 임명된 위원국의 3분의 1의 임기는 그 선거가 있는 정기총회 후에 개최되는 최초의 정기총회 회기의 종료일에 끝나고, 또 동시에 임명된 위원국의 다른 3분의 1의 임기는 그 선거가 행해진 정기총회의 통상회기의 말에 종료한다. 이들 위원국의 국명은 최초의 선거 후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의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다.

③ 이 위원회의 위원국은 자국의 대표로서 문화 및 자연의 유산에 관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한다.

제10조 ①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② 동 위원회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기관 혹은 개인에 대하여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가 있다.

③ 동 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가 있다.

제11조 ① 계약국은 될 수 있는 한, 자국 영토내의 문화 및 자연유산 중 동조항 제2항에 의거한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잠정목록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목록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목록제출에는 해당 유산의 소재지 및 중요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② 동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국이 제출한 목록에 기초하여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구성하는 유물로, 동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비추어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람표(세계유산일람표라고 칭함)를 작성, 매년 갱신하여 공포한다. 최신의 일람표는 적어도 1년에 1회 배포된다.

③ 세계유산일람표에 유산을 등록함에 있어서는 해당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개국 이상의 국가가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역 내에 존재하는 유산의 등록은 해당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 위원회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록된 유산 중 주요 보존작업이 요하고 이 협약에 의거 지원을 요청한 유산을 “위험에 빠진 세계유산일람표”로 작성하고 이를 갱신하고 공포한다. 이 일람표에는 보호작업에 요청되는 경비의 견적을 포함시킨다. 이 일람표에는 문화 및 자연유산 중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에 처한 유산만을 등록하여야 하며 그 위험으로 손괴가 진행됨에 따른 멸실의 위험, 대규모 공적 또는 사적 공사, 급격한 도시 개발 또는 관광 개발을 위한 공사, 토지의 이용 또는 소유권의 변동에 기인된 파괴, 미상의 원인에 의한 중대한 변경, 각종의 이유에 의한 방기, 무력 분쟁의 발생 또는 위협, 재난 및 대변동, 대화재, 지진, 홍수, 화산분출, 수위의 변화, 홍수 및 해일과 같은 중대하고도 특별한 위험 등을 들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언제든지 긴급시 “위험에 빠진 세계 유산일람표”에 새롭게 등록할 수 있으며 그 등록에 대해 즉시 공포한다.

⑤ 동 위원회는 문화 및 자연유산 중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일람표에 포함될 유산의 등재 기준을 정한다.

⑥ 동 위원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일람표 중 어떤 것이든 그 등재를 거부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자연 및 문화유산이 위치한 계약국의 의견을 구한다.

⑦ 동 위원회는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일람표의 작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조정하고 장려한다.

제12조 앞의 조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느 일람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타 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된 유산보다 덜 뛰어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13조 ①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 및 자연유산 중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고,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고, 또 기재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볼 때, 계약국이 제출한 국제적 원조의 요청을 수리 검토한다. 이 요청은 해당 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 또는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② 또 예비조사의 결과로 좀 더 조사할 가치가 인정될 경우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의 지정을 위해 제1항의 국제적 원조의 요청이 받아들일 수 있다.

③ 동 위원회는 그 요청에 대해 취할 행동, 나아가서 적당한 경우에는 지원의 성격 및 정도를 결정하며, 스스로 관련 정부와 필요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위임을 부여받는다.

④ 동 위원회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순위의 결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각 유산의 중요성과 자연환경 또는 세계 모든 국민의 창조성과 역사를 무엇보다도 잘 대표하는 유산에 대해서 국제적 원조를 줄 필요성, 보존작업의 긴급성 및 위협에 처해 있는 유산이 위치한 국가의 능력, 특히 그 국가가 해당 유산을 자력으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한다.

⑤ 동 위원회는 국제 지원이 이루어진 유산의 일람표를 작성하고 늘 갱신 공포한다.

⑥ 동 위원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기금의 자금 용도를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그 자금을 증액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모든 유용한 조치를 취한다.

⑦ 동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에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국제기관, 국내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구와 협력한다. 동 위원회는 사업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특히 국제문화재보존 및 보수연구센터(로마 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및 많은 공사 단체 혹은 개인의 지원을 구한다.

⑧ 동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 투표 위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행해진다. 동 위원회의 모든 회합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국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14조 ① 세계유산위원회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②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국제 문화재 보존 및 복원연구 센터(로마 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며 동 위원회의 서류 및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그 결의의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IV.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

제15조 ①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한 기금, 즉 “세계유산 기금”을 설립한다.

② 기금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재정 규칙에 의한 신탁 기금으로 한다.

③ 기금의 자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계약국의 의무 분담금 및 자발적 기부금

2. 다음과 같은 기관의 기증, 증여, 유증

(a) 계약국 이외의 국가

(b)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연합의 여타기구 특히 UNDP, 그 외의 정부간 기구

(c) 공적 또는 사적 기관 및 개인

3. 기금의 자금으로부터의 이자

4. 모금 및 기금을 위해 기획된 행사에 의한 수입

5. 세계유산위원회가 작성하는 기금 규칙에 의해 인정되는 그 외의 모든 자금

④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동 위원회에 대한 그 외의 형식에 위한 원조는 동 위원회가 결정하는 목적에만 사용한다. 동 위원회는 특정의 사업 용도에 한해서 기부받을 수가 있다. 단, 그 사업은 동 위원회가 이미 실시를 결정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기금에 대한 기부금에는 어떠한 정치적 조건도 붙일 수가 없다.

제16조 ① 체약국은 추가된 자발적 후원금에 관계없이 매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세계유산 기금에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분담금의 액수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정기총회 중에 개최되는 체약국 회의에서 모든 체약국에 적용하는 일정한 비율로 결정한다. 체약국 회의에서의 이 결정에는 과반수 이상의 체약국의 출석 및 투표를 요한다. 체약국의 분담금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정규 예산에 대한 자국 분담금의 1%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각국은 자국의 인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 기탁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언을 행한 체약국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하는 것으로 언제나 그 선언을 철회할 수가 있다. 단, 선언의 철회는 그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분담금이 있을 경우 차기 체약국 회의의 기일까지 효력을 발하지 않는다.

④ 제2항의 선언을 행한 체약국의 분담금은 동 위원회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어도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또 그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구속될 경우에 지불해야 할 분담금액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⑤ 해당 년도분 및 전년도(역년을 의함)분의 분담금 또는 자발적 후원금의 지불이 지체되고 있는 체약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선출될 자격을 갖지 못한다. 단, 이 규정은 최초의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불이 지체되고 있는 체약국으로서 동 위원회의 위원국인 국가의 임기는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 때에 종료한다.

제17조 체약국은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부를 구할 것을 목적으로 공사 재단 또는 단체의 설치를 고려하고 장려한다.

제18조 체약국은 세계유산기금을 위해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후원 아래 조직되는 국제적인 모금 운동에 대해 원조를 주도하도록 하고 또 제15조 제③항에 규정된 기관이 행하는 모금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다.

V. 국제 원조를 위한 조건

제19조 모든 체약국은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으로 자국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것을 위해 국제 원조를 요청할 수가 있고, 요청을 보냈을 경우, 자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제2조에 의거 동 위원회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한다.

제20조 제13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3조의 규정과 관련, 이 협약 하에서의 국제지원은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유산목록 중 어느 한 개의 목록에의 등재가 결정되었거나 등재될 수 있는 문화 및 자연유산에 한해 지원될 수 있다.

제21조 ① 세계유산위원회는 국제 지원을 요청하는 신청 절차 및 신청서의 기재 사항을 결정한다. 신청서에는 보호사업의 계획, 필요한 작업, 예상경비, 긴급도 및 원조를 요청하는 국가의 능력 즉, 모든 경비를 부담시킬 수가 없는 이유를 명기한다. 신청서는 될 수 있는 한,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재앙, 그 외의 천재지변으로 요청되는 지원신청은 긴급한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 위원회에 의해 즉시 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또 동 위원회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사태에 사용할 수가 있는 예비비를 준비한다.

③ 동 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필요한 연구 및 협의를 행한다.

제22조 세계유산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원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등재된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에서 제기되는 예술적, 학문적 그리고 기술적 문제에 관한 연구
2. 승인된 보존작업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기술자 및 숙련사의 공여
3.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관련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양성
4. 해당국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재 또는 구입할 수가 없는 기재의 공여
5. 장기 상환조건의 저리 또는 무이자 대부
6. 예외적, 특별한 이유의 경우 반환이 필요 없는 무상지원금의 공여

제23조 세계유산위원회는 또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조, 활용 및 기능 회복의 모든 분야에 관련된 직원 및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 또는 지역센터에 대해 지원을 줄 수 있다.

제24조 대규모의 국제원조는 상세한 학술적, 경제적 및 기술적 연구가 행해진 후에 주어진다. 이같은 연구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 및 기술 회복을 위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이 협약의 목적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이 연구에는 해당국가의 가용자원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아울러 모색하여야 한다.

제25조 원칙적으로 국제사회는 필요 사업의 일부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한다. 국제 원조를 받는 국가가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빼놓고 수혜국가는 각 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 세계유산위원회와 수혜국가는 이 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지원이 주어지는 사업의 이행 조건에 대해 양자간 협정문을 체결한다. 국제지원을 받은 국가는 합의문서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해당 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진다.

VI. 교육 사업

제27조 ① 체약국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특히 교육 및 정보사업을 통해서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 및 애호심을 높이도록 힘쓴다.

② 체약국은 문화 및 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 및 이 협약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활동을 널리 대중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8조 이 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지원을 받는 체약국은 지원의 대상이 된 유산의 중요성 및 지원의 역할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VII. 보고

제29조 ① 체약국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정기총회가 의결한 기간 및 양식에 따라 동 총회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에 있어서, 자국이 채택한 입법상 또는 행정상의 규정, 그 외 이 협약을 적용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에 관해 이 분야에서 얻은 경험의 상세한 보고와 함께 통보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세계유산위원회 공람에 부친다.

③ 동 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VIII. 최종 조항

제30조 이 협약은 아라비아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한다.

이들 다섯 개의 원문은 똑같이 정문으로 한다.

제31조 ①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각 회원국에 의해 각기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고 수락되어야 한다.

② 비준 및 수락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32조 ①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비회원국으로서 동 기구의 정기총회에 초청된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해 개방한다.

② 가입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는 것으로 행해진다.

제33조 이 협약은 제2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및 가입서가 기탁된 날짜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한다. 그리고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비준서, 수락서 그리고 가입서 제출 후 3개월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4조 다음의 규정은 헌법상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의 제도를 취한 체약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 협약의 규정 중 연방 및 중앙의 입법권의 법적 권한 아래서 실시되는 국가에서는 연방 또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연방제 국가가 아닌 체약국의 정부의 의무와 동일하다.
2. 이 협약의 규정 중 연방의 헌법상의 제도에 의해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지워지지 않는 각주, 지방, 현 또는 군의 법적 권한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이들 각주, 지방, 현 또는 군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 대해 채택에 관한 권고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제35조 ① 체약국은 이 협약을 폐기할 수가 있다.

②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도록 하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기탁한다.

③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수령 후 12개월부터 발한다. 폐기는 탈퇴가 효력을 발하는 날까지 폐기를 행하는 국가의 재정상의 의무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6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동 기구의 회원국, 제32조의 비회원국 및 국제연합에 대해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 그리고 전조의 폐기 통고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37조 ①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정기총회에서 개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해당 개정은 개정 협약의 체약국이 되는 국가에게만 해당된다.

② 정기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했을 경우, 새로운 개정 협약에 따라 정한 바가 없는 한, 새로운 개정 협약이 효력을 발하는 날로부터 구협약을 비준, 수락하거나 가입할 수가 없다.

제38조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 국제연합 사무처에 등록한다. 1972년 11월 23일 파리에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제17차 정기총회 의장 및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서명을 받은 원본 2통을 작성한다. 원본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기탁하도록 하고 그의 인증 등본은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국가 및 국제연합에 속달한다.

이상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파리에서 1972년 11월 21일 폐회한 제17차 정기총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채택한 협약의 원문이다.